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허가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대가 방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 조항 완화 (안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는 규정 중 농로의 요건 개정 (안 제 18조제1항제6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제한 완화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 변경(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대가 방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 조항 완화 (안 제13조제3항제 2호 및 제3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는 규정 중 농로의 요건 개정 (안 제 18조제1항제6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 변경(안 별표2)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별 조문에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입법의 취지

- 기존 완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당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3조제3항에서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 조항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부 가설건축물의 조건을 완화함.
 - 조건: (현행) 존치기간 + 연면적 → (변경) 연면적

- 안 제18조제1항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는 규정 중 농로의 요건을 변경함.
 - 조건: (현행) 사실상의 농로 → (변경)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

- 안 제23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을 상향하여 규제를 완화함.
 - 높이 기준: (현행) 9미터 → (변경) 10미터

- 안 별표 2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을 편이하게 변경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배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제15조제4항 관련)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 수 료
495제곱미터 이하	3천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4천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5천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7천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1만2천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1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2만원
<p>가. 증축, 용도변경 등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나.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2/8
495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4/8
661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6/8
1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8/8
2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0/8
3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2/8
4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4/8
5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6/8
5천제곱미터 초과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8/8
<p>가. 건축사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은 기술사로 본다.</p> <p>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산정식</p> $Y = \left\{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right\} \times Z$ <p style="text-align: center;">X:당해면적 X1:큰면적 X2:작은면적</p> <p style="text-align: center;">Y:당해수수료 Y1:작은면적 수수료 Y2:큰면적 수수료</p> <p style="text-align: center;">z:난이도(0.9, 1.0, 1.1)</p> <p>다. 수수료 산정시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이도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하며 건축사법 제19조의3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에 의거 1종(단순)은 0.9, 2종(보통)은 1.0, 3종(복잡)은 1.1을 적용함 <p>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해면적을 330제곱미터로 본다.</p>	

<개정>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제15조 제3항)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2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2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20퍼센트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0퍼센트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80퍼센트 이상 금액
2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0퍼센트 이상 금액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2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20퍼센트 이상 금액

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붙임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 개정

2. 주요내용

- 가. 「건축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부 건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 조항 완화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나.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 개정 (제15조제3항 별표2)
- 다.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규정 중 농로의 요건 개정 (제18조제1항제6호)
- 라. '23.9.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개정(건축법시행령 제86조)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개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3.12.6. ~ '23.12.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8769(2023.11.16.)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8769(2023.11.16.)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5830(2023.11.17.)호]
- 5) 건축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허가과-14907(2023.12.01.)호]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존치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농로”를 “포장된 농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제15조 제3항)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2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2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20퍼센트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0퍼센트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80퍼센트 이상 금액
2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0퍼센트 이상 금액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2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20퍼센트 이상 금액

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 (가설건축물) ①·② (생략)</p> <p>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u>존치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u></p> <p>3.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u>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u></p> <p>4. (생략)</p> <p>제18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13조 (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연면적</u>-----</p> <p>3. ----- ----- ----- 연면적-----</p> <p>4. (현행과 같음)</p> <p>제18조 (도로의 지정) ① ----- -----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6.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
우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
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
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
의 1 이상

② ~ ⑤ (생략)

6. -----포장된 농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1. ----- 10미터 -----

2. ----- 10미터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이 하 생 략-----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 하 생 략-----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이 하 생 략-----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2. 4. 10., 2016. 6. 30.>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하 생 략-----

□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0. 7. 4.,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2014. 10. 1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건축법」 제27조 및 「평창군 건축 조례」 제15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발생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허가과장 황 재 국
연락처	(033) 330 - 2100